

	<h2 style="margin: 0;">가상강좌 운영규칙 개정</h2>		규정번호	3-3-13
			제정일자	2001.03.02.
	개정일자	2017.03.01.	개정번호	Ver.6
			총페이지	2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재학생이나 재교육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시간적, 공간적 제약 없이 본 대학의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열린교육을 실시하고,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교육대상자의 정의)** 본 대학의 가상강좌는 재학생 및 총장이 허락한 자가 수강할 수 있다.

**제3조 (과정의 구분)** 재학생이 수강하는 과정을 정규과정이라 하고, 일반인이 수강하는 과정을 특별과정이라 한다.

**제4조 (수강신청 및 학점의 인정)** ① 본 대학 재학생은 일반 수강신청 기간에 가상강좌에 개설된 정규과정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고,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교과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산업체위탁생은 본 대학 및 원격교육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타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상강좌를 통해 총 16학점 이내(3년제 24학점)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<신설 2017.03.01.>

③ 특별과정은 총장이 정한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정규학점으로 인정이 된다.

**제5조 (강의계획서 작성 및 게시)** ① 강좌를 담당할 교수는 반드시 강의의 개요 및 주별 강의계획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작성, 게시하여 학생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교과목에 대한 강좌개설 시 교과분류는 인터넷강의로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② 가상강좌 교육프로그램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의하여 수업 게시일 1주일 전까지 지정된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3.01.>

**제6조 (강의평가)** 이 규칙에 의해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7조 (학생 평가 및 점수 비율)** 과제물 부여, 시험 등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수업관리)** 모든 수업방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교수학습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출석수업을 병행하도록 한다.

**제9조 (수강 인원의 제한)** 인원제한이 필요한 강좌는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시스템 이용 제한)** 가상강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,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사용계층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하여서만 가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1조 (등록생 확인)** 가상강좌 교육 등록생은 필요시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.

**제12조 (가상강좌 운영지원)** 가상강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원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**제13조 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신설 2017.03.01.>